



: 2016-07-19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

판 결

사 건 2015고단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한승훈(기소, 공판), 이주현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B(국선)
판 결 선 고 2016. 7. 12.

주 문

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C 1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15. 8. 21. 09:00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에 있는 연동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송면 쪽에서 고창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.

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



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(84세)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.

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도중 두개골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실황조사서,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

1. 사체검안서

1.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, 형법 제268조, 금고형 선택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

양형의 이유

[권고형의 범위]

일반 교통사고 > 제2유형(교통사고 치사) > 감경영역(4월~10월)



[특별감경인자]

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

[선고형의 결정]

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,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1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그곳은 연동마을 입구 부근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,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더욱 전방을 철저히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, 피고인은 2013년 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,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.

다만,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,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, 집행유예기간 중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,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임윤한 _____